#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78 발의연월일: 2021. 1. 27.

발 의 자:이종배·김정재·곽상도

임이자 · 김승수 · 태영호

윤영석 · 최승재 · 김예지

추경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제조업에서 생산의 핵심요소인 산업기계는 상당수가 고가인 수입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평균수명(약 9년)이 주요 선진국(일본 30년, 미국 50년)에 비해 매우 짧은 실정이며, 제품생산에 최적화된 기계가 외국에 판매됨으로써 기술유출 등의 문제점이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제공하는 담보물이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산업기계를 중요한 담보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기계의 등록, 평가, 검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업 기계의 수명 연장 및 생산원가절감을 도모하고, 산업기계의 국내유통 시장 조성 및 소유권의 외국 이전 제한을 통해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산업기계에 대한 체계적인 가치평가를 통해 담보가치 를 유지하고 인정받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강화하려는 것 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산업기계의 등록·평가·검사 및 산업기계사업과 산업기계관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유지·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기계의 소유자는 산업기계를 등록할 수 있으며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산업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등기할 수 있음(안 제4조).
- 다. 산업기계의 소유자는 산업기계사업자의 요청, 매매, 담보대출, 공제사업, 구조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기계에 대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라. 등록된 산업기계의 소유자는 해당 산업기계에 대하여 신규등록검 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9조).
- 마. 산업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1조).
- 바. 산업기계관리사의 자격 및 등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사. 산업기계관리사는 산업기계의 평가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계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아.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구매한 산업기계 등의 소유권을 외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26조).
- 자. 산업기계의 효율적 등록과 관리, 산업기계의 평가, 산업기계관리사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산업기계관리원을 설립함 (안 제27조).

##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계의 등록·평가·검사 및 산업기계사업과 산업기계관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유지·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활성화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산업기계"란 공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제품·반제품 등의 생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수송기계 및 건설기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 2. "산업기계사업"이란 산업기계의 대여, 정비, 매매(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포함한다) 및 폐기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3. "산업기계의 평가"란 산업기계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4. "산업기계관리사"란 산업기계의 평가 및 검사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계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산업기계의 등록 등) ① 산업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계를 등록할 수 있다.
  - ② 산업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산업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기계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등록검사를 한 후 산업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소유자에게 산업기계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산업기계의 소유자가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산업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등기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산업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산업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제 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

- 접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업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산업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등록의 말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등록된 산업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산업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 3. 산업기계의 소유권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 4. 산업기계를 도난당한 경우
  - 5. 산업기계를 폐기한 경우
  - 6. 구조적 제작 결함 등으로 산업기계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 7. 산업기계를 교육 ·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산업기 계의 소유자가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 ② 산업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기계의 소유권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자가 소유권을 외국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한다.
- ④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소유권을 외국으로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산업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 ⑥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 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산업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계등록원부를 보관·관리하여야 한 다.
  - ② 산업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산업기계의 평가) ① 산업기계의 소유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요청, 매매, 담보대출, 공제사업, 구 조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기계에 대하여 산업 기계관리사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계평가법인으로부터 산업 기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② 산업기계의 소유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새로 구입하거나 제작한 산업기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산업기계의 평가를 받아 제22조에 따른 산업기계평가서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라 산업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검사 등) ① 등록된 산업기계의 소유자는 해당 산업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신규등록검사: 산업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 2. 정기검사: 3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렁으로 정하는 검사유

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가동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3. 구조변경검사: 산업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기계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산업기계의 구조·규격 또는 성능 등이 중소벤처기업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산업기계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산업기계 의 경우에는 산업기계검사증을 산업기계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사대행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기계의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9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비, 기술인력 및 검사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계를 검사한 경우
- 4.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 ⑤ 검사대행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⑥ 검사대행자는 산업기계관리사에게 산업기계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1조(산업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산업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 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사업의 종류별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 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산업기계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산업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산업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산업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 산업기계사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산업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영업시설의 전부를 양수한 자는 종전의 산업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 산업기계사업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 ③ 산업기계사업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 간 제1항에 따라 산업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해당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처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양수나 합병 당시그 처분 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산업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 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1조에 따른 산업기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산업기계관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업기계관리사의 자격이 있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② 산업기계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산업기계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록 및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이 법에 따른 산업기계관리사가 아닌 사람은 산업기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업기계관리사가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16조(등록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산업기계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사망한 경우
  - 3.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 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산업기계관리사 사무소) ①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산업기계 관리사가 단독으로 산업기계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산업기계관리사 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할 수 없다.
- 1. 제2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산업기계평가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산 업기계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였던 사람
- 2. 제2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산업기계 관리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산업기계관리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산업기계관리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산업기계관리사 사무소에는 소속 산업기계관리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산업기계관리사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산업기계관리사 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산업기계관리사는 소속 산업기계관리사가 아닌 사람에게 산업기 계의 평가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산업기계관리사 사무소의 개설신고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산업기계관리사의 연수교육)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계관리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산업기계평가법인) ① 산업기계관리사는 산업기계의 평가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계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산업기계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산업기계관리사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계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산업기계관리 사가 아닌 자로 할 수 있으며, 산업기계관리사가 아닌 산업기계평가 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 ③ 산업기계평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산업기계관리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5. 사원의 출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 6. 업무에 관한 사항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산업기계평가법인과 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산업기계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 ① 산업기계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산업기계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 ⑧ 산업기계평가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속 산업기계관리사 외의 사람에게 산업기계의 평가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산업기계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⑩ 산업기계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① 이 법에 따른 산업기계평가법인이 아닌 자는 산업기계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20조(인가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계관리사 또는 산업기계평가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제19조에 따른 산업기계평가법인에 한정한다)하 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산업기계평가법인이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2.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산업기계의 평가 업무를 한 경우
  - 3.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산업기계관리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 간 중에 산업기계의 평가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4.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산업기계관리사 외의 사람에게 산업기계의 평가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5. 산업기계평가법인이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 6.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산업기계평가준칙) 산업기계의 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기계관리사 또는 산업기계평가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산업기계평가서) ① 산업기계관리사와 산업기계평가법인이 산업기계의 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평가를 실시한 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뢰인에게 산업기계평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산업기계평가서에는 산업기계관리사의 사무소 또는 산업기계평 가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산업기계의 평가를 행한 산업기계관리사 가 그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
  - ③ 산업기계관리사와 산업기계평가법인은 산업기계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제23조(산업기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산업기계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검사

대행자, 산업기계관리사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기계평가법인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 1. 제4조에 따른 산업기계 등록현황 및 통계정보
- 2. 제9조에 따른 검사현황 및 통계정보
- 3. 제10조에 따른 검사대행 현황 및 통계정보
- 3. 산업기계관리사 현황
- 4. 제18조에 따른 산업기계관리사 연수교육대상자 및 교육수료 현황
- 5. 제19조에 따른 산업기계평가법인 현황
- 6. 그 밖에 산업기계 평가, 검사, 등록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중소벤 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은 산업기계의 평가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의 체계적인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계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검사대행자, 산업기계관리사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기계평가법인 등에 산업기계종합정보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계종합정보망의 구축 •운영을 제27조에 따른 산업기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수수료 등) ① 산업기계관리사와 산업기계평가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 령으로 정한다.
- ③ 산업기계관리사와 산업기계평가법인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5조(손해배상책임) ① 산업기계관리사 또는 산업기계평가법인이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산업기계의 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산업기계의 평가를 하거나 산업기계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의뢰인이나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산업기계관리사 또는 산업기계평가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산업기계관리사 또는 산업기계평가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 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6조(기술유출의 방지 및 정보보호) ①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구매한 산업기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계를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외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산업기계의 소유권을 외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기계 소유권의 외국 이전 중지·외국 이전 금지

-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소유권 외국 이전 중지·외국 이전 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④ 산업기계 등록 및 평가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7조(산업기계관리원의 설립) ① 산업기계의 등록과 관리, 산업기계의 명가, 산업기계관리사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산업기계관리원을 설립한다.
  - ② 산업기계관리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 ③ 산업기계관리원은 법인으로 하며, 산업기계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산업기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산업기계의 등록 · 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 지원
  - 2. 산업기계의 검사 및 평가방법의 조사 및 연구
  - 3. 산업기계관리사의 교육·훈련 및 지도
  - 4. 산업기계 관련 빅데이터 수집・가공・유통 및 구축
  - 5. 제23조에 따른 산업기계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 6. 산업기계 관련 기존 기업의 4차산업혁명 전환 지원
  - 7. 산업기계 담보활용가치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력

- 8. 산업기계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국가 간 협력
- 9. 그 밖에 산업기계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 터 위탁받은 업무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계관리원이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산업기계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 2. 제13조에 따른 산업기계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 3. 제16조에 따른 산업기계관리사 등록의 취소
  -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계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 제2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소벤처 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
  - 2. 제5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자
  - 3. 제6조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자
  - 4.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업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 나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

- 5. 제9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
- 6. 제11조에 따라 산업기계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산업기계관리원에 위탁할 수있다.
-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계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사람
  - 3.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속 산업기계관리사 외의 사람에게 산업기계의 평가 업무를 하게 한 자
  - 4.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기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 3.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기계의 평가 업무를 한 사람
  - 4. 제19조제11항을 위반하여 산업기계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자
  - 5.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기계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 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